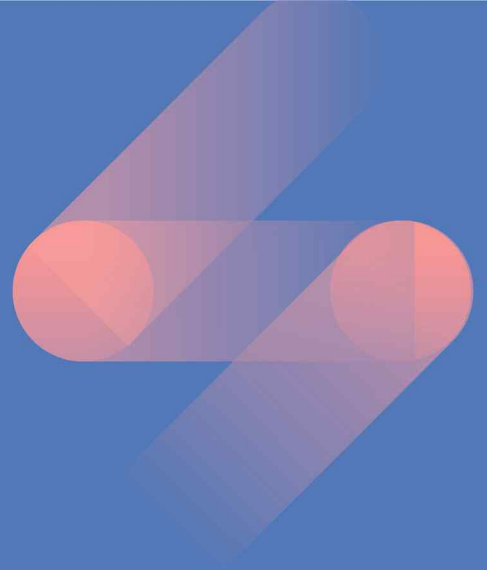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기각 및 각하 사례

기각 및 각하 사례 01 2024서울조정1203·120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과거 정정보도로 조정성립되었던 사건에 관해 원 기사를 총괄했던 보도책임자가 해당 정정보도가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개별적 연관성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정정보도] 'A 정당 B 의원'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과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원 B 씨가 ○○ △구의 공공기관인 □□□□을 유흥주점처럼 사용하고, ◇◇산 캠핑장 역시 사유지처럼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일부 사실에 기반한 거짓 보도로 확인되어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잘못된 정보를 접한 시민 등에 깊은 사과를 드리며, 유튜브 채널이 복구되는 즉시 해당 영상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 언론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정정보도)의 대상인 원 기사의 보도책임자로 활동하였던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취재기자가 퇴사한 후 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 건이 접수되자 원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정정보도를 이행하여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원 기사는 국회의원 B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취재기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던 것인데, 피신청인이 B 의원의 총선 공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정정보도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로 말미암아 신청인과 취재기자, 그리고 취재에 협조한 정보원과 시민 및 구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로 인식되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원 기사의 취재기자 역시 이전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된 바 있음

조정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과 관련한 정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 기사가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을 지목하거나 추지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이 원 기사의 보도 책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정대상보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문제로 삼은 부분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는 자는 원 기사를 취재한 기자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 대한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정정보도] ‘A 정당 B 의원’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YouTube〉에서 2023. 8. 29.에 방송한 【230829】 [○○판 ∇∇술자리] 「◎의 술친구 <◁◁◁ B 의원의 엽기 술판 ○○ △구청 ‘공공 룸싸롱’의 의혹 집중 추적」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 △구의 공공기관인 □□□□□을 룸싸롱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산 캠핑장 역시 사유지처럼 활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의 뜬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만으로 마치 B 의원이 ○○ △구청장 시절 공공기관의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술집처럼 활용하였다는 식의 거짓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로 인해 B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영상등은 계정이 복구되는대로 즉각 삭제할 예정입니다.

기각 및 각하 사례 02 2024서울조정2243·2244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각하

민사소송 승소 결과를 근거로 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법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시의회 △△△△△위원회 소속인 A 의원은 정례 회의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 및 주민의 공유공간 사유화로 인해 갈등이 격화된 B 임대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임대주택 관리 규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약자의 구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A 의원은 B 아파트에서 일어난 갈등의 핵심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 방식과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임대주택 대표자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행할 시 일반 분양단지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위임하는 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했다.

또 대표자의 권력 분산과 견제를 위해 동별 대표자를 정원제가 아닌 필수 3인의 공동대표로 구성하고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서 다루어진 ‘B 아파트 사례’의 갈등 당사자(前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로, A 의원의 발언은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신청인 보도로 인해 주택도시공사는 신청인이 7년간 사용한 임차인대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과 임차인대표자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자들은 피신청인 보도를 이용해 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선거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이 모두 승소하였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다년간 사용하던 임차인대표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됐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도 당하게 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신청인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소송에서 신청인이 모두 승소한 만큼 이에 대한 추후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이 사건 신청인은 보도에서 묘사된 갈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승소 결과를 근거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부는 이 사건이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결과를 근거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을 준용함에 따라 조정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조정대상보도

○○시의회 △△△△△위원회 A 의원은 제000회 정례회 0차 시정질문을 통해 □□ ◇◇동의 B 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들며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약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중략]**

하지만, “최초 아파트가 건립 이후 84년이 지나도록 주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문화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A 의원은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 ◇◇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 및 주민의 공유공간 사유화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이 격화된 내용을 자세히 공유했다. A 의원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 방식과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잘못을 따지기보다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일반 분양단지과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 개정하자.”고 A 의원은 제안했다. **[후략]**